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보호구역 지정·해제 시 의무적 실태조사 완화 규정 마련〉

■ 안철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260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안철수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02. 18.
3. 회 부 일 : 2025. 02.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교통환경의 변화여부와 관계없이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게 되어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때에만 실태조사를 수행하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이고 적절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현행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것을,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 시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현행	개정안
제12조의4(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 ① 시장등은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u>보호구역에서</u>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u>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u>	제12조의4(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 ① ----- ----- ----- -- <u>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거나 관리에 필요한 경우 해당 구역에서</u> ----- <u>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u>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행 「도로교통법」 제12조의4제1항은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실태조사 의무화는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도입되었음.

<보호구역 실태조사 개요>

- 근거: 「도로교통법」제12조의4(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 등
- 내용: 교통약자인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호구역 안전에 반영하고자, 자치단체에서 수행
 - 조사항목¹⁾: △교통사고 현황분석 △보호구역 현황조사 △시설규정 준수 여부 점검 △개선안 이행 점검 △현황도면 및 보고서 작성 등
-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2023.3.30.) 및 시행(2024.1.1.)
- 실시비용: 실태조사 1개소당 약 220만원 소요 (2024년 정기실태조사 기준)

개정안은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거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 1) 「어린이·노인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공동부령) 제11조의3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역(이하 “보호구역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제3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2. 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 또는 장소 주변 도로 중 시장등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 ② 실태조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구역등에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 수요
 2. 보호구역등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현황
 3. 보호구역등에 설치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현황
 4. 보호구역등에서의 교통사고 발생현황
 5. 보호구역등을 통행하는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수와 통행로의 체계 등
 6. 그 밖에 시장등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법은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환경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전체 보호구역 19,590개소 중 실태조사 등록이 완료된 곳은 10,494개소로, 이행률은 53.56%에 그치고 있음. 이는 예산²⁾과 인력 등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여건에 제약이 있어 모든 보호구역에 대해 실태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어린이·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현황>

구 분	계	어린이	노인	장애인
지 정(개소)	19,590	15,891	3,547	152

※ 자료 : 경찰청(25.2.28. 보호구역 시스템 통계 기준)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상 자치단체별 실태조사 업로드 실적>

24년도 실태조사 용역 예산 (천원)	보호구역 개소	실태조사 수행 등록건수	24년 실태조사 수행율(%)
21,194,226	19,590	10,494	53.56%

2) <실태조사 개소당 평균 비용>

구분	공단품셈	표준품셈	비고
정기실태조사	2,190,000원	2,790,000원	
특별실태조사	4,530,000원	2,830,000원	

※ 공단품셈 : 2023년 보호구역 실태조사 업무항목 및 소요인력 도출 연구용역(경기대학교) 결과 자료

※ 표준품셈 : 2024년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표준품셈 제정 결과 자료

※ 자료: 경찰청(25.2.28. 보호구역 시스템 통계 기준)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실태조사를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경우, 실태조사의 시행 여부가 각 지자체의 판단과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부 보호구역은 장기간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지역 간 안전관리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의무가 완화될 경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태조사 시행에 소극으로 접근할 여지도 있음.

<주요 자치단체별 교통약자 보호구역 실태조사 수행 현황>

자치 단체	용역수행금액(천원)	보호구역 개소	실태조사 수행 물량	수행률
서울시	390,000	1,898	1898	100%
부산시	673,200	916	29	3.16%
인천시	920,000	644	344	88.24%
충북청	1,509,484	1,259	1,111	88.24%
전남청	781,690	1,027	765	74.78%

※ 자료: 경찰청(25.2.28. 보호구역 시스템 통계 기준)

정기 실태조사는 ‘정기조사 → 시설 정비 및 개선 → 개선 사항 확인 후 정기조사’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① 보호구역 내 시설 정비, ② 공간정보 최신화, ③ 시설개선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며, 이러한 정기성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보호구역의 전반적인 안전관리가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음.

둘째, 보호구역 실태조사 의무화 제도³⁾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아직 그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임. 2025년 2월 현재 전체 보호구역의 약 50% 정도만 실태조사가 이루어져 있어 전체적인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에는 다소 이른 측면이 있음.

경찰청 역시 보호구역 실태조사 의무화 제도에 대한 현행 도로교통법이 초기 정착단계에 있으며,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제도 정착과 교통안전 환경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현행화가 필요하며,

정기실태조사를 통해 보호구역 시설의 정비, 보호구역 공간정보의 현행화, 시설개선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에만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일부 보호구역 관리만 가능해 전반적인 보호구역 안전관리가 취약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3) 「도로교통법」 개정 (2023.3.30.) 및 시행(2024.1.1.)

문 의 처
02)6788-5344